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9월 18일, 서영석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9월 1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2025. 11. 1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3. 11.)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6. 3. 13.)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서영석의원)

현행 「약사법」에서는 약국개설자를 약사 또는 한약사로 제한하고,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직접 약국을 개설 운영하여 그 책임을 분명

하게 하기 위한 것임. 이처럼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그 약국을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설과 운영을 구분하여 법을 적용함으로써 면허대여 등 불법 개설 및 중복개설 의심 약국에 대하여 처벌을 하지 않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음. 「의료법」에서는 제4조제2항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제33조제8항 본문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을 분리하여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이에 「의료법」 등 다른 의약관계법령의 취지에 맞춰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제21조를 개정함으로써 불법·편법적 지분투자나 네트워크 약국개설로 인한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개정안은 「의료법」의 예와 마찬가지로 「약사법」에서도 복수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행위 역시 금지하려는 것으로,

약국의 직접 운영 원칙을 분명히 하고 비약사 자본의 간접적 시장 진입과 네트워크형 약국의 확산을 차단하며, 궁극적으로 약국의 공공성과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현행법에 따른 위법성 판단은 약사의 실질적 조제행위 등 여부를 중심으로 ‘면허 대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다면, 개정안에 따르면 누가 약국 운영의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는 지를 중심으로 ‘경영 지배력’에 초점을 맞추어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의료법」 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안전과 약국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보임.

□ 다만, 약사의 복수 약국 개설 금지를 개설·운영 금지로 확대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약국의 공공성 보장이라는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정성·필요성 및 침해 최소성 등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개정안은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금지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료법」의 입법례¹⁾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약사회의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1)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